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50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조인철・박민규・황정아

김윤덕 • 강준현 • 이병진

이광희 • 박희승 • 오세희

임호선 • 백승아 • 최민희

고민정 • 박수현 • 서영교

이재강 • 문대림 • 이기헌

박해철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 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 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2조의4(중소 전문편성 방송채
	널사용사업자 지원) 정부는 채
	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
	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
	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